

#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2. 6.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「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·보완하고자 함.
-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‘20.10.20.) 개정	
○ 연가저축제 개선(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자동 이월·저축)	안 제15조제4항
○ 공무 관련 소환 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'경찰' 명시	안 제20조제2호
○ 재해구호휴가 개정	안 제21조제11항
○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	안 제21조제12,13항
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‘21.12.31.) 개정	
○ 복무실태 확인·점검 예시에 '유연근무' 추가	안 제4조제3항제1호
○ 공가부여기간 구체화	안 제20조
○ 공가 사유에 '감염병 확진검사', '예방접종' 추가	안 제20조제10호
○ 출산휴가 사용 사유에 '조산 위험' 추가	안 제21조제3항제3호
○ 난임치료시술휴가일수 확대(1~2일 → 2~4일)	안 제21조제7항
③ 직원 사기진작	
○ 장기재직휴가 실시대상 확대(5년이상 10년미만 5일)	안 제21조제9항
○ 퇴직준비휴가 탄력적 이용	안 제21조제10항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,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의5제1호 및 제2호 신설내용 중 근거 조문이 상위법규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조문이나, 법규명 없이 조문만 표시되어 있어 마치 본 개정조례안 조문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규명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